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27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19. 1. 31(목)

순서	검토안건	제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신종갑 의원 외 7명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신종갑 의원 외 7명
- 제안일 : 2019. 1. 21
- 회부일 : 2019. 1. 21 (의안번호 : 19 - 10)

2. 제안이유

-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소셜미디어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소셜미디어 운영(안 제3조)
-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관리(안 제4조)
- 소셜미디어 활용사업(안 제5조)
- 개인정보 보호(안 제6조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7명의 의원의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
-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,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의 보면
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바, “소셜미디어”란 페이스북, 트위터, 인스타그램, 카카오스토리,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(SNS)와 홈페이지,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규정함.
- 안 제3조에서는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으로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, 교육·문화·예술·관광·건강·복지·안전 및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4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, 안 제6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본 제정조례안은 마포구의 정책이나 행사를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이벤트 등에 지급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게시물의 등록 또는 삭제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·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